

(15) 지방세 지출보고서(2022년도 실적기준)

I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현황 개요

1. 비과세·감면 총괄표

(단위: 원, %)

| 구 분 | | '22년(결산)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
| 비과세·감면액(A) | | 129,855,561,330 |
| | 비과세 | 108,941,075,940 |
| | 감면 | 20,914,485,390 |
| 지방세 징수액(B) | | 886,212,541,660 |
| 비과세·감면율(A/A+B) | | 12.8 |

2. 기능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| 분 야 | | '22년(결산) | 비중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총 계 | | 129,855,561,330 | 100.000 |
| 1 | 일반공공행정 | 50,884,442,080 | 39.185 |
| 2 | 공공질서 및 안전 | 1,048,538,630 | 0.807 |
| 3 | 교육 | 13,410,312,780 | 10.327 |
| 4 | 문화 및 관광 | 3,226,063,470 | 2.484 |
| 5 | 환경 | 361,682,280 | 0.279 |
| 6 | 사회복지 | 5,302,132,440 | 4.083 |
| 7 | 보건 | 695,707,430 | 0.536 |
| 8 | 농림해양수산 | 489,532,970 | 0.377 |
| 9 |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| 2,010,911,800 | 1.549 |
| 10 | 교통 및 물류 | 102,130,930 | 0.079 |
| 11 | 국토 및 지역개발 | 1,673,264,940 | 1.289 |
| 12 | 과학기술 | 0 | 0.000 |
| 13 | 국가 | 50,001,634,090 | 38.506 |
| 14 | 외국 | 1,545,140 | 0.001 |
| 15 | 기타 | 647,662,350 | 0.499 |

3. 세목별 비과세 · 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| 분 야 | | '22년(결산) | 비중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총 계 | | 129,855,561,330 | 100.0 |
| | 보통세 | 127,021,005,410 | 97.8 |
| | 주민세 | 302,463,980 | 0.2 |
| | 재산세 | 121,396,443,630 | 93.5 |
| | 자동차세 | 5,322,097,800 | 4.1 |
| | 목적세 | 2,834,555,920 | 2.2 |
| | 지역자원시설세 | 2,834,555,920 | 2.2 |

4. 비과세 ·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

(단위: 원)

| 감 면 유 형 | '21년(결산) | '22년(결산) | 증감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정당에 대한 비과세 | 2,356,190 | 2,602,990 | 246,800 |
|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| 44,558,324,750 | 47,707,105,820 | 3,418,781,070 |
|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| 148,423,860 | 215,172,010 | 66,748,150 |
|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| 86,219,220 | 89,243,560 | 3,024,340 |
|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| 2,506,016,850 | 2,679,821,410 | 173,804,560 |
|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| 172,678,240 | 190,496,290 | 17,818,050 |
| 갯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| 2,930,460 | 2,331,760 | -598,700 |
|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| 1,193,444,090 | 1,046,206,870 | -147,237,220 |
|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| 7,377,369,950 | 7,894,827,410 | 517,457,460 |
|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| 13,890 | 54,370 | 40,480 |
|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| 4,135,736,500 | 4,438,822,740 | 303,086,240 |
|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| 556,859,190 | 1,076,608,260 | 519,749,070 |
| 종교,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| 2,894,104,500 | 3,189,110,930 | 295,006,430 |
| 신문,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| 16,311,530 | 15,917,450 | -394,080 |
|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| 6,923,660 | 6,655,720 | -267,940 |
|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12,325,400 | 14,379,370 | 2,053,970 |
|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| 812,860 | 879,380 | 66,520 |
|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| 0 | 10,271,790 | 10,271,790 |
|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| 1,245,380 | 1,226,470 | -18,910 |
|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| 336,763,130 | 349,304,640 | 12,541,510 |

| 감 면 유 형 | '21년(결산) | '22년(결산) | 증감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장애인에 대한 감면 | 2,120,049,400 | 1,983,002,930 | -137,046,470 |
|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| 271,332,830 | 263,305,800 | -8,027,030 |
|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| 16,478,060 | 15,852,710 | -625,350 |
|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| 3,009,250 | 2,795,620 | -213,630 |
|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| 821,420 | 41,997,930 | 41,176,510 |
|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598,454,890 | 558,635,210 | -39,819,680 |
|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| 1,680,505,620 | 1,939,448,050 | 258,942,430 |
|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| 75,997,770 | 75,664,100 | -333,670 |
|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| 361,032,530 | 414,048,270 | 53,015,740 |
|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| 2,552,600 | 7,381,820 | 4,829,220 |
|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| 3,813,920 | 215,162,890 | 211,348,970 |
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199,775,770 | 478,136,370 | 278,360,600 |
|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| 400,090 | 2,408,170 | 2,008,080 |
|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| 3,738,450 | 3,847,480 | 109,030 |
|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| 56,926,840 | 58,551,540 | 1,624,700 |
|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| 15,111,500 | 16,695,120 | 1,583,620 |
|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| 1,323,150 | 1,412,870 | 89,720 |
|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| 33,657,240 | 36,005,250 | 2,348,010 |
|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| 778,890 | 811,590 | 32,700 |
|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| 359,890,460 | 365,743,220 | 5,852,760 |
|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| 6,377,520 | 5,590,930 | -786,590 |
|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| 1,855,940 | 874,970 | -980,970 |
|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| 115,528,380 | 131,304,150 | 15,775,770 |
|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| 1,450,560 | 700,000 | -750,560 |
| 연구·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| 136,177,320 | 157,229,940 | 21,052,620 |
|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| 142,079,590 | 131,023,010 | -11,056,580 |
|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| 99,961,140 | 86,502,440 | -13,458,700 |
|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1,389,251,080 | 1,504,152,260 | 114,901,180 |
|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| 94,226,430 | 99,753,450 | 5,527,020 |
|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| 3,592,360 | 2,377,480 | -1,214,880 |
|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| 127,638,160 | 4,823,170 | -122,814,990 |

| 감면 유형 | '21년(결산) | '22년(결산) | 증감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| 1,197,188,720 | 1,248,843,180 | 51,654,460 |
|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| 357,979,020 | 419,598,590 | 61,619,570 |
| 국가에 대한 비과세 | 47,668,926,500 | 49,888,243,400 | 2,219,316,900 |
|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,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| 185,156,190 | 113,390,690 | -71,765,500 |
|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| 1,393,050 | 1,440,220 | 47,170 |
|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| 104,920 | 104,920 | 0 |
|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| 249,017,790 | 249,129,880 | 112,090 |
|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| 66,019,810 | 115,823,350 | 49,803,540 |
| 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| 421,710 | 441,840 | 20,130 |
|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| 3,798,140 | 3,968,980 | 170,840 |
|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| 64,228,360 | 66,441,290 | 2,212,930 |
|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| 1,244,030 | 1,280,180 | 36,150 |
|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| 121,955,760 | 210,576,830 | 88,621,070 |

II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항목별 세부내역

1. 일반공공행정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일반공공행정 | | 합 계 | 50,884,442,080 |
| 1 |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자동차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 - 지방자치단체가 국방, 경호, 경비, 교통순찰, 소방, 환자수송, 청소,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1·2호) | 소 계 | 47,707,105,820 |
| | | 주민세 | 14,130,000 |
| | | 재산세 | 46,641,961,630 |
| | | 자동차세 | 14,964,88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1,036,049,310 |
| 2 |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·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 | 소 계 | 215,172,010 |
| | | 재산세 | 182,556,77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32,615,24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3 | 정당에 대한 비과세 - 정당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9①·②·③) | 소 계 | 2,602,990 |
| | | 주 민 세 | 50,000 |
| | | 재 산 세 | 2,342,46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210,530 |
| 4 |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·면제(지방세법 §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§90①, §90②) | 소 계 | 89,243,560 |
| | | 주 민 세 | 2,500,000 |
| | | 재 산 세 | 85,949,54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794,020 |
| 5 | 사유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비과세 -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3호) -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1호, §145②) | 소 계 | 2,679,821,410 |
| | | 재 산 세 | 2,679,821,410 |
| | | - | |
| 6 |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- 지방공사·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①②) -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, 재단 법인에 대한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③) | 소 계 | 190,496,290 |
| | | 재 산 세 | 190,496,290 |
| | | - | |

2. 공공질서 및 안전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공공질서 및 안전 | | 합 계 | 1,048,538,630 |
| 7 |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-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①) | 소 계 | 2,331,760 |
| | | 재 산 세 | 2,331,760 |
| | | - | |
| 8 |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- 천재·지변·소실·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레저·주민·재산·자동차·지방소득·담배소비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·면제(지방세 | 소 계 | 1,046,206,87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| 특례제한법 §4④, §92① 1호, §92②·③) -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(지방세법 §9⑦) - (경북)소상공인이 취득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- (양산)상업용·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- (양산)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- (남원)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,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- (시군구 조례)감염병 피해 및 복구지원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감면 - (취득세 100%)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한 상속 취득 | 주 민 세 | 550,000 |
| | | 재 산 세 | 162,967,330 |
| | | 자동차세 | 881,711,34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978,200 |

3. 교육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교 육 | | 합 계 | 13,410,312,780 |
| 9 |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방소득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 | 소 계 | 7,894,827,410 |
| | | 주 민 세 | 80,926,500 |
| | | 재 산 세 | 7,550,473,24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263,427,670 |
| 10 |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-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 | 소 계 | 54,370 |
| | | 재 산 세 | 54,370 |
| | | - | |
| 11 |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①, §41②, §41③, §41⑤) -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·실습용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입목·선박에 대하여 취득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①, §42②) -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⑥)(폐지) -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⑦) -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9) | 소 계 | 4,438,822,740 |
| | | 주 민 세 | 41,494,750 |
| | | 재 산 세 | 4,098,024,13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299,303,860 |
| | | - |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12 |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-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 -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·재산세 면제,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8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②) -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의2) | 소 계 | 1,076,608,260 |
| | | 재 산 세 | 1,076,608,260 |
| | | - | - |
| | | - | - |

4. 문화 및 관광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문화 및 관광 | | 합 계 | 3,226,063,470 |
| 13 | 종교·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- 종교·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0①, §50②, §50③, §50⑤, §50⑥) -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④) | 소 계 | 3,189,110,930 |
| | | 주 민 세 | 56,470,000 |
| | | 재 산 세 | 2,871,130,91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261,510,020 |
| 14 | 신문·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- 신문·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1) | 소 계 | 15,917,450 |
| | | 주 민 세 | 15,917,450 |
| 15 | 문화·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①) - 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·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조의2) - (서울 종로구) 인사동·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- (서울) 공연장에 대한 취득·등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- (경기, 양주) 양주 장흥 문화·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 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 재산세 감면 - (제주)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| 소 계 | 6,655,720 |
| | | 재 산 세 | 6,655,72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16 |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①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, 보호구역 내 부동산 및 국가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②) - 국보,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(조례) - (서울 종로)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- (서울 성북) 등록 한옥 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-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-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| 소 계 | 14,379,370 |
| | | 재 산 세 | 14,379,370 |
| | | | |

5. 환경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환경보호 | | 합 계 | 361,682,280 |
| 17 |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-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,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) | 소 계 | 879,380 |
| | | 재 산 세 | 879,380 |
| 18 |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-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감면((지방세특례제한법 §48) -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 - (서울 서초)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- 제6조(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) 「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·지정 고시된 토지, 지상건축물,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(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하고,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. | 소 계 | 10,271,790 |
| | | 재 산 세 | 10,271,790 |
| | | |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19 |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-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9) | 소 계 | 1,226,470 |
| | | 재 산 세 | 1,226,470 |
| | | - | - |
| 20 |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-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,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3~10%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①) -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15~20%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②) -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득세 10%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③) -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50% 재산세 50%(5년간) 감면,대수선의 경우 취득·재산세(5년간)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4①)(폐지) -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~1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4③) - (제주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| 소 계 | 349,304,640 |
| | | 재 산 세 | 349,304,640 |
| | | - | - |

6. 사회복지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사회복지 | | 합 계 | 5,302,132,440 |
| 21 | 장애인에 대한 감면 -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 1~3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자동차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 - 시각장애(4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조례) | 소 계 | 1,983,002,930 |
| | | 자동차세 | 1,983,002,930 |
| | | - | - |
| 22 | 사회복지법인·시설·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- 사회복지법인, 양로원·보육원·모자원·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①, §22②, §22③, §22⑤) -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%,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4) | 소 계 | 414,048,270 |
| | | 주 민 세 | 29,905,770 |
| | | 재 산 세 | 343,516,31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40,626,19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 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⑥) - (제주)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등에 대한 감면 - (지방소득세 50% 천안)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| - | |
| 23 |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9) -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140만원 한도)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2 ①, §22의2②) - (제주)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- (제주)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| 소 계 | 263,305,800 |
| | | 재 산 세 | 263,305,800 |
| | | - | |
| 24 |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료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 -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 - 양로시설,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2호) | 소 계 | 15,852,710 |
| | | 재 산 세 | 15,520,40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332,310 |
| 25 |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카우트 주관단체, 한국청소년연맹, 한국해양소년단연맹,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75% 감면,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1①) -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1②) | 소 계 | 2,795,620 |
| | | 재 산 세 | 2,795,620 |
| | | - | |
| 26 |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의3 1호) -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의3 3호) - 법률구조법인·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3①,②) | 소 계 | 7,381,820 |
| | | 재 산 세 | 7,381,820 |
| | | - |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27 |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7①2) -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7②2) | 소 계 | 41,997,930 |
| | | 재 산 세 | 41,997,930 |
| | | - | - |
| 28 |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①)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②, §29③) -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④) | 소 계 | 558,635,210 |
| | | 주 민 세 | 150,000 |
| | | 재 산 세 | 28,862,620 |
| | | 자동차세 | 526,092,63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3,529,960 |
| 29 |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설임대주택 60㎡이하 취득세 면제, 60~85㎡(20호 이상) 50% 감면, 매입임대주택 60㎡이하 취득세 면제, 20호 이상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①·②) 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적별 25%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④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25%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⑥)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면적별 50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3) -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4)(폐지) -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1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5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①) -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·재산세 50% | 소 계 | 1,939,448,050 |
| | | 재 산 세 | 1,939,448,05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|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조의4)(폐지) | | |
| 30 |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- 대상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% 감면(225만원限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①) 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②) -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③)(폐지) -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공시가격 6억원限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의2) | 소 계 | 75,664,100 |
| | | 재 산 세 | 75,664,100 |
| | | - | - |

7. 보전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보전 | | 합 계 | 695,707,430 |
| 31 |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- 서울대학교병원, 서울대학교치과병원, 국립대학병원, 국립암센터, 국립중앙의료원, 국립대학치과병원,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7) | 소 계 | 215,162,890 |
| | | 재 산 세 | 215,162,890 |
| | | - | - |
| 32 |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,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, 재산세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①2) -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·재산세 75%(감염병전문병원 85%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의2) - (경기 포천)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·주민세 면제 | 소 계 | 478,136,370 |
| | | 재 산 세 | 478,136,37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33 |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- 인구보건복지협회·한국건강관리협회·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7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) | 소 계 | 2,408,170 |
| | | 재 산 세 | 2,408,170 |
| | | - | - |

8. 농림해양수산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농림해양수산 | | 합 계 | 489,532,970 |
| 34 |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- 자경농민의 농지·임야,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①, ②) - 도로·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③)(폐지) -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④) - 농기계류 및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) -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②) - 농어업인이 영농, 가축사육, 양식,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원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 -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 1호) - (부산·대구·인천·경기·경남)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 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%→50%→25% 감면 - (경기 광주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% 감면 - (제주)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 재산세 50% 감면 - (제주)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 - (제주)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감면 | 소 계 | 3,847,480 |
| | | 주 민 세 | 426,250 |
| | | 재 산 세 | 3,421,230 |
| | | - | - |
| 35 |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-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호) | 소 계 | 58,551,540 |
| | | 재 산 세 | 58,551,54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의2호) -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(환매취득 면제)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2호) -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3호) -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4호) -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5호) -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③) | - | |
| 36 |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①) - 영농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②) -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④)(폐지) | 소 계 | 16,695,120 |
| | | 재 산 세 | 16,695,120 |
| | | - | |
| 37 |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림유전자원보호림·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③ 2호) | 소 계 | 1,412,870 |
| | | 재 산 세 | 1,412,870 |
| | | - | |
| 38 |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①) -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②) -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,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③) -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(종업원·사업소)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 -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 1호) | 소 계 | 36,005,250 |
| | | 재 산 세 | 30,845,87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5,159,380 |
| | | - |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39 | 어법법인에 대한 감면 - 어업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①) -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②)(폐지) | 소 계 | 811,590 |
| | | 재 산 세 | 811,590 |
| | | - | |
| 40 |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①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% 감면,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③, §14④) | 소 계 | 365,743,220 |
| | | 주 민 세 | 186,510 |
| | | 재 산 세 | 365,556,710 |
| | | - | |
| 41 |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-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 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5①) -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100% 감면(조례로 조정가능)(지방세특례제한법 §15②) | 소 계 | 5,590,930 |
| | | 재 산 세 | 5,590,930 |
| | | - | |
| 42 |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·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㎡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(280만원 공제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6) | 소 계 | 874,970 |
| | | 재 산 세 | 874,970 |
| | | - | |

9.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산업·중소기업 | | 합 계 | 2,010,911,800 |
| 43 |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-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이 해당 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①, ②) -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①, ②) -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| 소 계 | 131,304,150 |
| | | 재 산 세 | 131,304,150 |
| | | - |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| <p>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③) (폐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%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호) 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%, 재산세 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의2호)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특법 §119②, §120③, §121)(삭제) -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목적 최초 취득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세 50%, 재산세 50%(3년간)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9③) | | |
| 44 | <p>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③) - 정부로부터 인·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·장학단체·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 | 소 계 | 700,000 |
| | | 주 민 세 | 700,000 |
| | | - | |
| 45 | <p>연구·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견기업,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45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①·②) -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③) -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60%, 재산세 50% 감면(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0%,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④) - 시험분석·연구용 담배,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54① 6·7호) - (광주, 광주북구)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 | 소 계 | 157,229,940 |
| | | 재 산 세 | 157,229,940 |
| | | - |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46 |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·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 특례제한법 §58①)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중과 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②) -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하고 3년간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 특례제한법 §58③) 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·재산세 37.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④) -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,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%, 재산세 37.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2 ①) -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, 재산세 37.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2 ②) - 위기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%, 재산세(5년간)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5의3) - (인천·광주·강원·전남)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 - (서울·경기)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(제주)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면제 - (강원·경북 문경)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%, 3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(대구·경북)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50% 감면 - (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제주·경기평택·강원·충북·전북·경북·경남) 고용창출기업(고용우수)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% 감면 | 소 계 | 86,502,440 |
| | | 재 산 세 | 86,502,440 |
| | | | |
| 47 |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-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,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 50~100%, 재산세 50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의3) | 소 계 | 131,023,010 |
| | | 재 산 세 | 131,023,010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| (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) | - | |
| 48 |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·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·건설기계 등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 - 자동차·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①) -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, 중고기계장비,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,000분의 20을 감면,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③) | 소 계 | 1,504,152,260 |
| | | 자동차세 | 1,504,152,260 |
| | | - | |

10. 교통 및 물류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수송 및 교통 | | 합 계 | 102,130,930 |
| 49 |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-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①) -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,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②) -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% 감면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③) 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·등록면허세·재산세 100%감면(조례로 조정가능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⑤) | 소 계 | 99,753,450 |
| | | 재산세 | 99,753,450 |
| | | - | |
| 50 |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-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차 정원 7~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, 2007.12.31.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에 한정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7③) - (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대전·울산)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| 소 계 | 2,377,480 |
| | | 자동차세 | 2,377,480 |
| | | - | |

11. 국토 및 지역개발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국토 및 지역개발 | | 합 계 | 1,673,264,940 |
| 51 |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6②) - (대구 달성군, 인천 계양구·남동구·서구, 경기 평택시·여주군·동두천시)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| 소 계 | 4,823,170 |
| | | 재 산 세 | 4,823,170 |
| | | - | - |
| 52 |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-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% 감면,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①) 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분양·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②) 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③) - 산업단지, 유지지역,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%, 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75%), 대수선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④) -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·임대 및 매각 사업, 후생복지·교육 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%, 재산세 50% 감면(수도권외 75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⑥)(삭제) - 산업단지 내 개축·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(조례) - 농공단지 내 휴·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조례) - (부산, 해운대)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 - (광주 광산구)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 - (대전 유성·대덕구)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| 소 계 | 1,248,843,180 |
| | | 재 산 세 | 1,248,843,180 |
| | | - | -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강원, 동해시)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·증축시 재산세 5년간 75% 감면 - (광역공통 수도권외)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·증축 부동산(조례25%+법50%) - (전주) 연구개발특구지역 사업시행자 분양, 임대 목적 부동산 | | |
| 53 |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①) -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②) -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4③) | 소 계 | 419,598,590 |
| | | 재 산 세 | 419,598,590 |
| | | - | - |

12. 국가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국 가 | | 합 계 | 50,001,634,090 |
| 54 | 국가에 대한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방소득세·지역자원시설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, §145① 1호) - 국가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·청소·오물수거와 도로공사, 우편·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) | 소 계 | 49,888,243,400 |
| | | 주 민 세 | 12,338,750 |
| | | 재 산 세 | 48,921,870,090 |
| | | 자동차세 | 92,098,78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861,935,780 |
| 55 |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 | 소 계 | 113,390,690 |
| | | 재 산 세 | 109,005,34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4,385,350 |

13. 외국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외 국 | | 합 계 | 1,545,140 |
| 56 |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-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·지방소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2호, §90, §109①, §145②) - 주한외교기관,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 3호) | 소 계 | 1,440,220 |
| | | 자동차세 | 1,440,220 |
| | | - | |
| 57 |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-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·자동차·지방소득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77① 2호, §90, §126 3호) | 소 계 | 104,920 |
| | | 자동차세 | 104,920 |
| | | - | |

14. 기타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기 타 | | 합 계 | 647,662,350 |
| 58 |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- 임시 흥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⑤, §109③ 3호, §109③ 5호, §145②) -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③ 5호) | 소 계 | 115,823,350 |
| | | 재산세 | 92,663,43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23,159,920 |
| | | - | |
| 59 |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① 6호) - 행정구역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·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·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2호) -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,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④) -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②) -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2·4호) | 소 계 | 249,129,880 |
| | | 자동차세 | 249,129,880 |
| | | - | |

| 연번 |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| 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세 목 | '22년(결산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매년 1월 1일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 -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①) | | |
| 60 |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, 도관시설, 급·배수시설,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137①) | 소 계 | 441,84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441,840 |
| | | - | |
| 61 |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①) -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·주민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②) | 소 계 | 3,968,980 |
| | | 주 민 세 | 450,000 |
| | | 재 산 세 | 3,518,980 |
| | | - | |
| 62 |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1호, §87② 1호) -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,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,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2호, §87② 2호) | 소 계 | 66,441,290 |
| | | 재 산 세 | 66,441,290 |
| | | - | |
| 63 |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①) -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②) | 소 계 | 1,280,180 |
| | | 재 산 세 | 1,280,180 |
| | | - | |
| 64 |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의2) | 소 계 | 210,576,830 |
| | | 주 민 세 | 46,268,000 |
| | | 재 산 세 | 97,190,010 |
| | | 자동차세 | 67,022,480 |
| | | 지역자원시설세 | 96,340 |